

## 「경상북도 정보보호 창업 아이디어톤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(재)포항테크노파크에서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기업과 인재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「경상북도 정보보호 창업 아이디어톤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7일

(재)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

### 1 공고 개요

가. 사업명 : 경상북도 정보보호 창업 아이디어톤 지원사업

나. 지원주제 : 보안(정보보안, 물리보안, 융합보안 등) 기반 창업 아이디어

다. 지원대상 : 경상북도 내 정보보호 관련 청년 예비/초기 창업기업

라. 지원금액 및 규모

○ (간접지원) 최대 180만원/1개팀, 16개팀 내외

○ (직접지원) 최대 1,500만원/1개팀, 3개팀

※ 총사업비의 10%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요

마. 지원내용

○ 예비창업 컨설팅 지원 : 기술 컨설팅 4회, 창업 컨설팅 2회

○ 창업·사업화 지원금 지원

- 예비창업 컨설팅 지원팀 중 상위 3개팀 대상 창업과제 지원금 지급

\* 1등 15백만원, 2~3등 10백만원 예정

- 선정팀은 지원 기간 내 경상북도 내 창업 필수

## 바. 지원 기간

- 예비창업지원 컨설팅 지원
  - 서류 검토 후 1개월 내외('24.10월 예정)
- 창업·사업화 지원금 지원
  - 선정 평가 후 2개월 이내('24.11~12월 예정)

## 2 지원대상 세부요건 (신청자격 및 요건)

### 가. 신청자격 : 경북지역 내 정보보호 관련 청년 예비/초기 창업자(팀)

#### ◆ 공통사항

- 지역제한 : 경북지역 내 거주 중인 자
- 지원연령 : 공고일('24. 10. 10.)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
- 멘토지정 : 경북지역의 정보보호 역량 전문가
- 참여팀구성 : 지원 조건 만족하는 대표자 포함 2~5인

#### ◆ 예비창업자 조건

- 공고일('24. 10. 10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- 단, 사업공고 전일('24. 10. 9.)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(부도·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)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

#### ◆ 초기창업자 조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('24. 10. 10.) 기준 3년 이내인 자

\*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'회사성립연월일'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'개업연월일' 기준

## 나. 신청제외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-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-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(기업)

#### 다. 창업·사업화 지원과제 선정 시 의무사항

- 선정자(기업)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북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\*
- \* 사업자등록 확인 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
- 선정자(기업)는 대표자의 사망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·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인수합병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- 선정자(기업)는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3 지원내용

### 가. 예비창업 컨설팅 지원

- 지원기간 : 서면평가 후 1개월 내외(‘24.10월 예정)
- 지원내용
  - (기술컨설팅 4회) 제출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컨설팅
  - (창업컨설팅 2회)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
- 지원방식
  - 선정자(기업)는 사전 제출이 승인된 기술, 창업 멘토\*와 컨설팅 수행 후 수행 보고서 제출
- \* 창업 멘토가 지원 가능한 팀은 2개팀을 초과할 수 없음

## 나. 창업·사업화 지원금 지원

- 지원기간 :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 후 2개월 이내(24.11월~24.12월 예정)
- 지원내용 : 신규인력 채용,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
- 지원규모 : 최대 3개 과제, 과제당 10백만원~15백만원 내 지원  
※ 총사업비의 10%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요
- 지원항목

| 비목  | 세목     | 비목정의   | 최대 산정비율 |
|-----|--------|--|---------|
| 인건비 | 보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</li> <li>* 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)은 인건비 지급 불가</li> <li>* 사업종료 2개월 이전 4대 보험에 가입한 신규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</li> </ul>   | 50%     |
| 운영비 | 재료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</li> </ul>  | 50%     |
|     | 외주 용역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li> </ul>   | 70%     |
|     | 광고 선전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,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/ul>  | 30%     |
|     | 일반 수용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부 자문료 및 컨설팅 비용</li> <li>•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입비</li> <li>• 참여인력의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</li> <li>• 각종 수수료 (인증, 특허취득비 등) 등</li> <li>• 회계법인 정산 위탁 수수료 (1社당 52만원 필수 책정)</li> </ul> | 30%     |
|     | 임차료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이템 개발에 관련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</li> </ul>  | 30%     |
| 여비  | 국내여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이템 개발과 관련된 국내 출장비</li> </ul>   | 5%      |

## 4

# 지원(예비)기업 모집·선정 계획

### 가. 모집방법

- 모집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4. 10. 10.(목), 13시
- 접수방법 : e-mail(arkim@ptp.or.kr) 접수
- 문 의 처 : Tel. 054-223-2183
-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| 번호 | 서식명  |
|----------|----|--|
| 필수       | 1  | 사업계획서 (서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2  | 중복지원금지 약속서 (서식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3  | 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(서식3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4 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내)                     |
| 초기<br>기업 | 5  |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(홈택스 발급분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6  |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해당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7  | 최근 3개년 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) 각 1부 (홈택스 발급분) |
|          | 8  | 최근 3개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(각 연도말 기준으로 발급)        |
| 해당시      | 9  | 가점 해당서류(교육수료증, 대회 입상증명,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)        |
|          | 10 | 정부, 공공기관 표창 수상실적 및 인증서류                      |

### 나. 지원기업 선정

- 평가절차 :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및 평가진행
  - (1단계) 서면평가 :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, 자격요건, 증빙서류, 멘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격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, 시장성 등 평가
  - (2단계) 발표평가 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, 시장성 등 평가
- 평가위원회 운영
  -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, 창업예정자를 선정함
  - 사업신청 건수가 지원목표 건수보다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| 평가항목       |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문제인식 (25)  | - 정보보호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    | 5   |
|            | - 정보보호 창업 아이템의 목적 (필요성)  | 10  |
|            | - ICT기술 활용 및 지역산업과의 부합성  | 10  |
| 해결방안 (30)  | - 데이터셋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    | 10  |
|            | -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| - ICT 기술 적용 정도           | 10  |
| 성장전략 (30)  | - 창업 아이템의 개발고도화 및 사업화 개요 | 10  |
|            | -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(활용) 전략     | 10  |
|            | - 사업비 집행계획               | 10  |
| 사업 역량 (15) | - 대표자, 팀원의 보유역량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| - 재무건전성 (부실위험 여부)        | 5   |
| 합 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다. 최종선정 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,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

## 5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 중 일부(③컨설팅 지원 ~ ⑦사업수행)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